



장수군
JANGSU COUNTY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군 보

정기 제485호 2022. 5. 2(월)

조 레

장수군 조례 제2602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수군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장수군 조례 제2603호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장수군 조례 제2604호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장수군 조례 제2605호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장수군 조례 제2606호	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15
장수군 조례 제2607호	장수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27

규 칙

장수군 규칙 제1197호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9
---------------	----------------------------------	----

입법예고

장수군 공고 제 2022-514호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안	32
--------------------	------------------------	----

고 시

장수군 고시 제2022-54호	개간사업 준공인가 고시	41
------------------	--------------	----

예 규

장수군 예규 제597호	장수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2
--------------	-------------------------	----

회 람							
--------	--	--	--	--	--	--	--

장수군 조례 제2602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수군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수군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장 수 군 수

제1조(「장수군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장수군 정책기획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16조의2”를 “「지방자치법」제130조”로 한다.

제2조(「장수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19세”를 “18세”로, “150명 이상 200명이하로”를 “150명 이상이어야”로 한다.

제3조(「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

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7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15조”를 “「지방자치법」제19조”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제15조 및 제66조”를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제76조”로 한다.

제4조(「장수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로,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으로 한다.

제5조(「장수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4조”를 “「지방자치법」제117조”로 한다.

제8조(「장수군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장수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제10조(「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장수군 본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본청,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조”를 “「지방자치법」 제9조”로 한다.

제12조(「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12조”를 “「지방자치법」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제12조”를 “「지방자치법」제16조”로 한다.

제13조(「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5조(「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장수군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6조”를 “「지방자치법」 제141조”로 한다.

제16조(「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의 개정)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7조(「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장수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8조(「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20조(「장수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장수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57조”로 한다.

제21조(「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장수군 농기계사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6조”를 “「지방자치법」제153조”로 한다.

제22조(「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6조”를 “「지방자치법」제153조”로 한다.

제23조(「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의 개정)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26조”를 “「지방자치법」제141조”로 한다.

제24조(「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2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단순 인용 조문 정비 (제1조~제24조)
- 「장수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감사청구 연령 및 주민수 개정 (제2조)
 - 「지방자치법」제21조 개정 :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하 →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

장수군 조례 제2603호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부경”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중

리의 하부조직 및 관할구역(제3조 관련)

읍면명	리명	리장수	분리명	만명	관할구역	비고
장수	장수	8	하비 부경	1 2 1	본정통 본동 부경	
소계	13		45	95		

1. 개정이유

-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2. 주요내용

- 행정구역 분리·반 조정(별표 2)
- “별표 2” 중,
 - 장수읍 장수리 하비마을을 “하비”, “부경”으로 분리 및 1개반 신설

장수군 조례 제2604호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50원”을 “4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0원”을 “8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2022년 6월 30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
 - 2022년 6월 30일까지 일몰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 (제11조)
 - 1) 전자송달, 자동이체 납부 중 택 1인 경우 : 150원 → 400원
 - ※ 법 250원 ~ 800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 2) 전자송달, 자동이체 납부를 병행하는 경우 : 300원 → 800원
 - ※ 법 500원 ~ 1,600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장수군 조례 제2605호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장수군”을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

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 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 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 은행의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 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1. 개정이유

-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의 분법으로 제정된 「지방회계법」의 시행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에 맞추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 5. 9.)의 시행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인「지방재정법」 일부가 「지방회계법」(법률 제14197호)로 분법되어 관련 조항 개정 (제1조~제2조)
-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의무 조항 신설 (제5조2제3항~제4항)
-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의무 조항 신설 (제7조제5항)

장수군 조례 제2606호

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치유의 숲 내에 설치된 치유센터, 테마숲, 치유 숲길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3.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치유의 숲 안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내는 비용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치유의 숲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산림휴양법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복지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비룡리 산84-2, 산84-52 일원에 조성한 장수군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운영 · 관리 등) ① 치유의 숲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휴양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유의 숲의 운영 · 관리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산림복지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를 지도하게 하거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게 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비용, 위탁조건,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치유의 숲 및 부대시설의 운영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치유의 숲 운영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치유의 숲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제6조(시설의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치유의 숲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의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2.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의 개수 ·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정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위배된 행위
 3.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각종 상행위
 5. 동물 포획, 식물 채집, 토석 채취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6. 시설물 이전 · 오손(汚損) · 파괴 및 화재위험 행위
 7. 그 밖에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7조(체험예약) 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체험일이 3일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체험료 등) ①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②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체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2. 국가보훈대상자
 3. 「주민등록법」에 따른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군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표 1 체험료의 50퍼센트를 감면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5. 「장수군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6. 산림휴양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산림휴양시설 및 관광지 당일 이용자
- ③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제10조(체험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납부한 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군의 사정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체험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체험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체험료의 50퍼센트
 5. 체험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경우: 전액 미반환
- ② 체험료의 반환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 금액에서 뺄 수 있다.

제11조(세입조치)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의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2조(대장 등의 비치) ① 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체험 신청서
 2. 치유의 숲 시설 관리대장(건강측정기 및 치유장비 등)
 3. 치유의 숲 근무일지
 4. 그 밖에 치유의 숲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서류
-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고 기록·정리하는 신청서, 근무일지, 대장 등의 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보험가입) 군수는 이용자가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때를 대비하여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치유의 숲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파손한 자에게 원상회복이나 실비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준용)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험료(제8조 관련)

구 분	기 준	체 험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산 립 치 유 프 로 그 램	2시간 기준 (1인)	5,000원	4,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 -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회차에 일괄 신청하는 일행을 말한다. - 장수군민 체험료 면제은 본인에게만 적용 되며, 일행이 장수군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 - 특별한 재료가 소요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재료비 등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체험료 징수내역

년 월 일

(단위: 원)

일자	여의한回事					여의축소 및 반환내역					비고
	여의일	사용일	입금일자/ 현증판매	예의금액/ 현증판매액	입금자	취 소	취소일	총불 금액	유의금	반환 계좌	
요청일	성명	연락처									

[별지 제2호서식]

일 일 정 산 서

결	담당자	담당	과장
재			

- ◎ 장수 치유의 숲
- ◎ 정산일자:
- ◎ 출력일자:

(단위: 원, 명)

구 분	일 계			월 계		누 계		
	인 원	체험료 (a)	재료비 (b)	합계 (a+b=c)	인 원	금액	인 원	금 액
일반 개인								
일반 단체								
일반 할인								
면제								
소 계								
위약금								
합 계								

제485호

군

보

2022. 5. 2(월)

[별지 제3호서식]

시설 및 비품 관리대장

년 월 일 현재

품 명	재 질	규 격	수 량	단 위	장부가격

[별지 제4호서식]

근무일지

년 월 일 요일

근무자	구분	직	성명	근무시간		주요업무내용		
체험료 관리	구분	체험료(원)			예약취소 반환금(원)			카드
		현금결제	카드결제	현금취소	카드취소	위약금		입금액
	산림치유 프로그램							
시설 순찰 내역	순찰시간	순찰구역	순찰결과	순찰자	순찰시간	순찰구역	순찰결과	순찰자
인력 관리	구분	성명	작업내역		위탁관리	작업내역		
시설 점검 내역	시설구분	점검장소		점검결과	시설구분	점검장소	점검결과	
	가스, 소방				건물, 창고			
	전기, 통신				야외, 숲길			
지시 사항				지시사항 조치결과				
시설 관리	물품수불 내역				시설보수 내역			
특이 사항								

1. 제정이유

- 장수군 산림자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장수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 (제1조~제3조)
- 치유의 숲 운영·관리, 운영시간 및 휴관일, 시설의 이용 제한에 대한
규정 (제4조~제6조)
-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예약, 체험료, 체험료의 감면, 체험료의 반환,
세입조치에 대하여 규정 (제7조~제11조)
-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따른 대장 등의 비치, 보험가입, 손해배상 등에
대한 규정 (12조~제15조)

장수군 조례 제2607호

장수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장수군의회 의결을 거친 장수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장수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장수군에 소재하고, 장수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별표6제1호나목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장수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제1조)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제2조)

장수군 규칙 제1197호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장수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5월 2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1점)”을 “(27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10점)”을 각각 “(8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1점)”을 “(19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1) 및 2) 중 “7점”을 각각 “6점”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6점”을 “5점”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건전성, 1점)”을 “(유동성, 2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8점)”을 “(20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6점)”을 “(7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점)”을 “(6점)”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점)”을 “(21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점)”을 “(8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7점)”을 “(6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8점)”을 “(7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2점)”을 “(25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점)”을 “(6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7점)”을 각각 “(8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점)”을 “(7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4점)”을 “(2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2019. 5. 9.)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되어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평가 항목 및 배점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금고지정과 관련한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을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추어 정비

장수군 공고 제 2022-514호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정안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장 수 군 수

1. 제정이유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 조성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 조성 (안 제1조)
-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 정의 (안 제2조)
- 군에서 설치·운영, 위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 감면우대 (안 제4조)
- 다른 조례의 개정 (부칙 안 제2조)

3. 따로붙임

- 가. 제정조례안
- 나. 관련법령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별지서식1 참고)를 장수군수(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주소)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안
전재난과(전화 : 063-350-2480, FAX : 063-350-
571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재무과 담당자 박경애(전화 : 063-350-
248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반 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제3조(홍보 및 예우)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예우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장수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 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장수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에 대하여 병역명문가가 제4조제1항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작은목욕탕 이용 요금표)에 우대의 미취학아동란 다음에 병역명문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용 요 금 표			
구 分		금 액	비 고
우대	병 역 명 문 가	1,500원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②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장애인”을 “장애인, 병역명문가”로 한다.

③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 30퍼센트
할인

④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④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별표 2(사용료 감면기준)에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감면구분	감면율(%)	비고
5호.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10	

관련 법령**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시행 2022. 2. 10.] [병무청훈령 제1864호, 2022. 2.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82조에 따라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병역명문가 대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제외 대상) ① 지방병무청장은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한다. 다만, 직계비속 여성이 현역복무 등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병역이행자에 포함할 수 있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

투 · 의무 · 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입영 후 신분이 변동되어 이전 신분의 의무복무기간이 지난 경우 포함). 다만, 현역 복무 중 전사 · 순직한 사람이나 전상 · 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이 있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강점기에 독립군 · 한국광복군 등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독립우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②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한다.

1. 병역판정검사 · 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군무 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다만, 현역 등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에 따라 단기간 현역복무를 하였거나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가. 귀휴 전역 정교사(구 병역법 1957. 8. 15., 제8조)
- 나. 해군 예비역장교 · 하사(구 병역법 1981. 12. 31., 제62조의2)
- 다. 교대예비역 하사(RNTC)(구 병역법 1983. 12. 31., 제51조)
- 라. 예비역 공중보건의사(구 병역법 1978. 12. 5., 제30조)
- 마. 자연계교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9조의 2)
- 바. 특수전문요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0조의 2)
- 사. 승선근무예비역(병역법 제21조의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계비속 남성 중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 검사 대상이 되는 해가 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

가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20일까지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별표 1의 병역명문가 가계도, 별지 제4호서식의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명문가 대표자 명단 등을 포함하여 병역명문가 선정 결과를 매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집중 접수기간 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에 는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 및 선정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병무청장은 제13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 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서 및 별표 2의 병 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증서대장과 별지 제8 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 발급(출납)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증 발급을 병무청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분실 또는 훼 손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증(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9 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재발급한다.

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영문으로 병 역명문가 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영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영문증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취업 추천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 추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장수군 고시 제2022-54호

개간사업 준공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개간사업 준공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일

장 수 군 수

1. 사업의 목적 : 특용작물 재배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치 : 전북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산44-2번지 일원
- 면적 : 2,287m²

3. 사업비 : 금36,910,000원

4. 사업기간 : 2019. 12.~ 2022. 04.

5. 사업의 효과 : 농가소득 신규창출 및 증대

6. 사업시행자 : 손 귀 진

장수군 예규 제597호

장수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장수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2022년 5월 2일

장 수 군 수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

면(전자문서 및 청렴 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군수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가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니어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업무 중 군이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군수면 이해충돌 방지담당관을 말한다)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가족채용 제한 대상 확인) 군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군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 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받으면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8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0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징계양정 기준) 군수가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5조 관련)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1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제16조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제17조	지구계획의 승인
3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제54조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4	국방·군사시설 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작성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6	마을정비구역에 서의 농어촌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7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7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8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특별법」	제9조 제15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9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제9조 제50조 제52조 제101조의3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계획의 입안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10	혁신지구재생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제46조	혁신지구의 지정 혁신지구계획의 승인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11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 구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 제28조의2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물류단지개발 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의2 제28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28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작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제12조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29조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산업단지개발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3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40조의2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농공단지의 지정 준산업단지의 지정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12	역세권개발 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3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7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4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5조 제10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15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16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17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신청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제31조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작성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18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제23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19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0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제1항 제2호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21	예비타당성 조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별표 2]

법 위반 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0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악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악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악하고 경과실인 경우	참고 기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령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건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호 하목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건책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호 하목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건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호 파목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호 파목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건책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20조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 같은 법 제19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건책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호 하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호 하목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건책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날()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나록부터 바도록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협력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③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직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파태료·과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증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별·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실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개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계되는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날()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② 직무관련자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기타()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직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회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관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명	
소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앞 쪽)
------	-----	--------------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기타()		
	소속()	직위(직급)()	성명()

기타 참고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지정·등록·등재·인정·증명·신고·심사·보호·감호·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직무 또는 부직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실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별·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협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신청하는 조치 유형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직무관련자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직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별·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현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건축사업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③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면, [] 및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부동산 []보유자 []매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본인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배우자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주소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	
--	--

부동산	유형 [] 토지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input type="checkbox"/> 지상권 <input type="checkbox"/> 전세권 <input type="checkbox"/> 분양권) [] 건물 (<input type="checkbox"/> 소유권 <input type="checkbox"/> 전세(임차)권 <input type="checkbox"/> 분양권)	취득(예정)일
	소재지	
	지번	지목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제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본인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① 특수관계사업자
	연락처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거래내용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 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빌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910mm x 297mm의 바운지 A4size(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비용부담자
	[] 골프 [] 여행 [] 사행성 오락	[] 신고인 [] 퇴직공무원 [] 기타()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날()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장수군수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수사기관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조사기관	장수군수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 ² (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종결사유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장수군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일시	장소	
신고사항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방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input type="checkbox"/>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input type="checkbox"/> 가족 채용 제한 <input type="checkbox"/>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input type="checkbox"/> 수의계약 체결 제한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input type="checkbox"/>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input type="checkbox"/>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 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 규정

2. 주요내용

- 목적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제1조, 제2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 · 기피 신청,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제3조~제4조)
- 부동산 보유 · 매수 신고 및 조치 (제5조~제6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제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 (제7조~제8조)
-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9조~제11조)
- 신고 · 신청의 기록 관리, 위반행위 신고, 이첩 · 송부, 종결처리 (제12조~제16조)
- 이의신청, 교육, 위반여부 상담, 징계양정 기준 (제17조~제21조)

군보발행안내

◎ 군보 발행 안내

- 군보는 매월 1일, 15일자로 정기 발행됩니다. (휴일의 경우 익일 발행)
※ 긴급을 요하는 경우 호외 발행
- 군보의 법적 우선효력은 종이군보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보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군보계재 의뢰 안내

- 근거법규 : 장수군보발행규정 제9조(계재절차)
- 원고 접수 마감 : 매월 10일, 25일
- 군보계재 의뢰 방법 : 계재의뢰 공문(시행문) 1부 송부